

# 전화부가 서비스 이용약관

2019. 4. 19

세종텔레콤(주)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화부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의 이용에는 전화서비스 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계약

## 제3조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사전에 지정된 착신처로 호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단순 호전환 연결 일반형" 대표번호 서비스
  2. "음성인식형" 대표번호서비스
  3. 가상번호나 생활번호(차량·우편·주민·고객번호 등)와 결합된 "VPN형" 대표번호서비스
  4. "ARS 호스팅형" 대표번호서비스
  5. 위치기반 대표번호서비스
- ② 결제호처리 서비스 :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 또는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에게 식별번호(전국대표번호, 1639)를 부여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결제대행 업체간 전용통화(결제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 ③ 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 : 특정 프리픽스(Prefix)를 이용한 콜렉트 콜을 착신가입자의 요금 대납 수락시에만 착신호를 연결하는 서비스
  - 전화 승인 서비스 : 고객이 특정한 서비스(인터넷뱅킹등)에 가입하여 사전에 이용 동의 및 등록한 전화번호로 통화 연결하는 서비스로 요금은 서비스 이용자(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서비스
- ④ 착신자과금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발신자)가 080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가입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자과금서비스
- ⑤ 개인번호서비스 : 가입자의 여러 가지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이용시에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단순 호전환 연결 일반형" 개인번호서비스
  2. 음성인식 기능과 결합된 "음성 인식형" 개인번호서비스
  3. 가상번호나 생활번호(차량·우편·주민·고객번호 등)와 결합된 "VPN형" 개인번호서비스
  4. "ARS 호스팅형" 개인번호서비스
  5. 안심번호서비스 : 수신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임시의 가상번호에 실제 연결 가

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하여, 개인번호로 통화시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착신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6. 050팩스 서비스 : 개인번호를 통해 팩스를 수신 받는 서비스

7. 안심번호레코딩서비스 : 녹취인프라와 050번호를 이용한 녹취서비스

- ⑥ 음성포탈 대표번호 서비스 : 음성포탈 대표번호 서비스는 체인화된 지역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각 업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전화번호를 한 번호로 통합하고, 사용자가 통합된 번호를 사용하여 필요한 업종과 연결을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⑦ 세종 레터링 서비스(SEJONG Lettering Service) : 세종직통회선서비스 및 세종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고객 중 수신자에게 발신자가 지정한 문구를 착신 단말기에 표시해 주는 서비스 (단, 발신자 지정문구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고객의 상호, 브랜드, 가입자 실명에 한하여 16Byte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며 수신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등록이 제한됨)
- ⑧ 다자간 컨퍼런스 서비스 : 주최자가 전화를 통해 2인 이상의 회의를 주최하고 최초 주최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
- ⑨ 스마트컨퍼런스 서비스 : 국내/외 원격지에 있는 다수 인원이 전화로 회의할 수 있는 서비스
- ⑩ 전화비즈링서비스 : 회사의 대표번호서비스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화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음 대신 광고 및 홍보내용을 자동 송출하는 서비스
- ⑪ 전화알림멘트서비스 : 회사의 대표번호서비스 및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화 유입경로를 안내해주는 서비스
- ⑫ 지능형 SMS/MMS 서비스 : 지능망서비스 번호에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SMS/MMS) 기능을 연동하여 문자, 이미지 등을 송/수신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대상 지능망 서비스 번호 : 전국대표번호(1688, 1666, 1668), 개인번호(050), 착신자과금서비스(080), 음성포탈 대표번호(1685), 전화정보서비스(060)
  - 단, 지능형 MMS서비스는 전국대표번호만 이용가능
  - 가입대상 : SMS/MMS를 송수신할 수 있는 회사의 지능망서비스 번호에 가입한 후, 자체설비 또는 회사의 SMS/MMS 연동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능망 번호에 메시지 송/수신 기능을 연동하려는 지능망서비스 가입자
- ⑬ BMS 부가서비스 : 당사 지능망 서비스(전국대표번호, 착신자과금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해당 번호로 발신한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미리 설정한 문자메시지가(SMS, MMS 등) 발송되는 서비스
- ⑭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발신자)는 무료로 통화를 하고 가입자(착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

####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 ① 이용 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 합니다.

### 제5조 (승낙의 유보)

- ①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하고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의 체납상태인 경우
  3. 회사 카드의 위조, 변조 등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단말기기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9.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10.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
  11. 5회선 이상의 다량 회선을 신청 받는 경우

### 제6조 (이용번호의 부여 및 관리)

- ① 부가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신청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 ② 부가서비스 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부여에 대해서는 [별표1]서비스 이용요금 1항을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③ 회사는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에는 부여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④ 번호 부여 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착신회선이 번호 등급별 최저 회선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번호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기준 회선수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별정사업자의 080 회선증설금지, 재계약금지, 직권해지 및 이용정지등의 제제조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1. 080 별정통신사업자가 080회선을 회사와 협의 없이 제 3의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재 임대 또는 공동 사용한 경우
2. 080 별정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임대, 공동사용, 재판매 등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⑥ 080회선을 사용하는 선불카드 사업시 발행규모, 회선용량, 이용약관 등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⑦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의 번호부여에 대해서는 '[별표1]서비스 이용요금'의 '14.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 합니다.

### 제7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②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본 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본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의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본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 제8조 (번호의 변경)

- ① 이용자는 부득이하게 번호변경이 필요한 경우 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 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 개월 동안 일 평균 1 건 미만의 이용통화량이 발생한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통지의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정지 등

### 제9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회사가 설치 또는 대여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에 연결한 경우
  3.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6.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7.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포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기타 전화서비스 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제10조 (이용제한 및 차단)

-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일시이용중단)

- ① 이용자는 서비스 혹은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일시이용중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이용중인 번호의 유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휴지 처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체결한 해당 계약기준에 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착신 회선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3.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4. 요금감면의 부적격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5.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6. 기타 전화서비스 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 ③ 본조 제2항 제5호의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 ④ 본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장 요 금

### 제13조 (과금거리의 산정)

- ① 요금산정을 위한 거리(이하 "과금거리"라 합니다)는 과금기점 상호간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 ② 과금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로 하며 1킬로미터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과금기점 및 관할구역, 과금거리는 케이티가 정하여 공시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 제14조 (요금의 산정)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 제15조 (요금의 계산)

- ①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1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② 1일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 합니다.
- ③ 월정액으로 하는 요금에 있어서 개시일은 산입하고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때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사용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월정액의 30분의 1일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④ 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입자 모집 등 회사의 영업행위를 대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가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제16조 (최저이용료의 계산)**

- ①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월간 실사용금이 최저 이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 이용료를 적용합니다.
- ②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의 개시, 해지, 이용정지, 이용제한, 일시이용중단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월 요금은 실사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제17조 (감면 및 할인)**

- ①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대상은 시외전화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18조 (요금사전납부할인)**

회사는 요금납부책임자가 사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할 금액에서 2%를 익월 청구할 금액에서 할인하여 청구합니다.

#### **제19조 (손해배상)**

-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18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 ③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5 장 번호이동**

#### **제20조 (번호이동 등록)**

- ① 타사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번호이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한 번호는 080착신과금서비스번호,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이며 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 1. 번호이동 신청 : 서비스 별 번호이동 신청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관리센터와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직접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인의 자격 및 요건 : 개인인 경우 가입자와 그 배우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단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직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 ③ 가입자가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④ 가입자는 번호이동 등록 시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본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계약내용 미 이행 시에는 대납금액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⑤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⑥ 번호이동성 이용고객은 최근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⑦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 ⑧ 번호 판매 중계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별표1]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 입니다.

### 1.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 가. 전국대표번호 번호등급 기준

번호등급	번호유형	최저 회선수
0	XXXX(X=0~9), X000(X=1~9), X114(X=0~9), 기타(1004, 8585, 0119) 국번호와 가입자번호가 동일한 번호	200 회선
1	000X, 00XX, XX00, XXX0,1X00(X=2~9), 기타('0112,1234,8572,1472,7979,9494,8282, 8272,2580,3651,4989)	50 회선
2	X0X0, 0X0X, 00X0, 0X00, XYXY, XXYX, X119,X00X, X666(X=2~5,7~9),기타(8255,8555,1777)	35회선
3	00X0, X00X, 0XX0, 0XXX, XXOX, XY00, X0XX,XXX0,XYXX, XXYX, XYXX, 00XY, 0XY0,0X0Y, X00Y, 0XXY, X0Y0,XXY0,XY82, WXYZ(W<X<Y<Z), ZYXW(Z>Y>X>W), 기타(2482, 7942,1357,7890,2468)	10회선
4	상기 외 번호	2회선

※ X/Y = 1~9

※ 이용신청자가 번호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회선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를 부여합니다.

※ 이용신청자가 번호 신청시 해당 등급 내 번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번호 부여 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착신회선이 번호 등급별 최저 회선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번호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기준 회선수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번호이동성 이용료 : 2,000원/번호

○ 기본료 = 회선당 이용료 X 이용회선 수

- 번호등급별 최저 회선수 미만 이용시 최저 회선수를 이용회선 수로 함

-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 시 변경전 사업자의 기본료 보다 '기본료'가 높아질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기본료를 적용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료(서비스 계약자 부담) : 88원/건(이동통신 사업자 구분 없음)

○ ARS서비스 가입자는 분리과금형 과금 옵션 또는 정액형 과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TYPE1

1. 통화료

구분	시내/시외1대역	시외 2대역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이동전화착신
통화료	42.9원/3분	세종시외 2대역요금	71.5원/3분	이동전화 요금	16.313원/10초

2. 단, 공중전화 발신통화료는 이용자가 케이티 공중전화이용약관의 시내통화료를 부담하고 계약자는 위 시내요금과 이용자 부담액의 차액을 부담

3. 이동전화착신 요금은 계약자가 부담

4. 회선이용료(서비스 가입자에 해당)

- 회선당 이용료 : 11,000원/1회선

- VPN : 가상번호 또는 생활번호 당 계약기간 단위 기본료

계약기간	월	1년	2년	3년	5년
기본료(원)	1,100원	3,300원	5,500원	7,700원	11,000원

※ VPN 번호 5천개 이상 신청시만 대표번호 할당

※ 장기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월 단위 기준으로 기본료 계산

5. 시내전화요금 이상의 요금 부과 시, 즉시 요금정보 제공, 단 안내멘트 시간은 과금에서 제외

6. 과금 옵션

- 옵션A : 모든 통화에 대해 요금을 이용자(발신자)에게 과금

- 옵션B : 42.9원/3분은 발신자, 나머지는 계약자 부담

- 옵션C : 통화료 중 이동전화 발신폭에 대해서만 이용자(발신자)에게 과금

7. 전국대표번호 ARS서비스 이용료

구분	서비스이용자	서비스계약자	비고
ARS기본형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착신회선당 기본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부가사용료 : 3,300원/월/회선	TTS, 시나리오기능 전화연결기능 등 제공
ARS 프리미엄형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착신회선당 기본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부가사용료 : 11,000원/월/회선	ARS기본형 기능 성우녹음/DB연동 등 기능제공
ARS 커스텀형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착신회선당 기본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부가사용료 : 55,000원/월/회선	ARS프리미엄형 기능 시나리오 별도 개발제 공

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할인

○ 약정기간 할인 : 약정기간에 따라 기본료 할인

약정기간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4년 약정
할인율	10%	30%	40%	50%

- 할인반환금 : 계약기간 내 해지시 부과
- 산정식 : (월 기본료 X 이용월수) X (약정기간 할인율 - 이용기간할인율)
- 이용기간할인은 1년 미만은 0%, 2년 미만은 1년 약정기간 할인율 적용
- 장기이용고객 할인, 중소기업 할인과 중복할인 적용불가

○ 장기이용고객 할인

- 대상 : 회사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에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고객으로 회사에 장기 이용고객 할인을 신청한 고객. 단, 제9조(이용정지), 제10조(이용제한 및 차단), 제11조(일시이용중단)에 해당되거나,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할인율 : 이용중인 번호등급(할인전 등급)의 차하위 번호등급 요율 적용
- 장기이용고객 할인적용 기준

1688		1666		번호이동	
할인전 등급	할인후 등급	할인전 등급	할인후 등급	할인전 등급	할인후 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회선당 이용료 할인*)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회선당 이용료 할인*)	4등급	4등급 (회선당 이용료 할인*)

※ 회선당 이용료 할인

신청 회선수	회선당 이용료
2회선~10회선 이하	11,000원
10회선 초과	11,000원

- 계약기간 : 1년
- 할인반환금 : 계약기간 내 해지 시 부과
- 산정식 : (할인 전 기본료 - 할인 후 기본료) X 이용월수
- 약정기간 종료 후에는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음
- 약정기간 할인, 중소기업 할인과 중복할인 불가

- 중소기업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대상
  - 할인율 : 월 기본료의 50% 할인
  - 약정기간 할인, 장기이용고객 할인과 중복할인 적용불가
  - 할인대상이 되는 고객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전국대표번호 정액형 서비스

- 기본료 : 41,800원/회선 (다량회선 할인제 적용)
- 통화료

구 분	시내/시외1대역	시외 2대역	인터넷전화	이동통신	이동전화착신
통화료	42.9원/3분	42.9원/3분	71.5원/3분	이동전화 요금	16.313원/10초

- 다량회선 할인 내역

회선수	요금	회선수	요금
~ 119	41,800원	501 ~ 700	29,700원
120 ~ 200	38,500원	701 ~ 1,000	28,600원
201 ~ 300	35,200원	1,001 ~	27,500원
301 ~ 500	30,800원		

- 공중전화 발신 통화료는 이용자(발신자)가 케이티 공중전화이용약관의 시내통화료를 부담하고 계약자는 시내요금과 이용자의 차액을 부담
- 이동전화 착신 요금은 계약자가 부담
- 과금옵션
  - 정액형 요금 옵션A : 모든 통화에 대해 요금을 발신자에게 과금
  - 정액형 요금 옵션B : 통화료 중 이동전화 발신호에 대해서만 발신자에게 과금

라.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TYPE2

- 통화료

구 분	시내/시외 1대역	시외 2대역	인터넷 전화	유선 →이동망	이동망 →유선	이동망 →이동망	국 제	
							이동망발신	유선망발신
통화료	44원/1분	세종시외 2대역 요금	전국 71.5원/3분	17.193원 /10초	-	9.9원/10초	주1)	세종 국제 전화요금

※ 주1) 세종 국제전화요금 - 일정금액(19.8원/10초)

- 공중전화 발신통화료는 이용자가 케이티 공중전화 이용약관의 시내통화료를 부담하고 계약자는 위 시내요금과 이용자 부담액의 차액을 부담

○ 기본료(서비스 가입자에 해당) : 월 22,000원/회선

## 2. 결제호처리 서비스

### 가. 결제호처리 서비스 이용료

○ 기본료 : 번호당 착신회선료(기본료) 부과는 전국대표번호 4등급 일반형 기준 적용

○ 통화료

구분	요금제	비고
이용자 사용요금	26.4원/건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간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결제호에 한함

○ 가입요건

1. 결제호 처리 서비스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 받아 제공하는 가입형 서비스이며, 가입을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 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가 가입을 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본 항 등록증과 업무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본 서비스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결제 대행업체간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호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3. 상기 2항의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시 회사는 해당 번호에 대한 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가입 해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결제호처리 서비스는 회사가 부여한 번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는 신청 접수 시 희망하는 번호 또는 회사가 부여하는 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대표번호 : 1688-YYYY, 1666-YYYY, 1668-0000~4999 ( Y: 0~9)
  - 전용번호 : 1639-7000~7999 (1천개)

## 3. 자동 콜렉트 콜 서비스

### 가. 통화료

발신 구분	착신 구분			
	과금거리 30Km까지 및 인접통화 구간(I)	과금거리 31km이상 (II)	무선	VoIP
유선	0.33원		2.64원	0.33원
070 VoIP	0.33원		2.64원	0.33원
과금 단위	1초			

※ 1통화당 요금의 1원 미만은 절사 함

나. 전화 승인 서비스 통화료

구분	이용요금		비고
	통화료(전화승인용)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19.8원/10초	

※ 전화 승인 서비스의 사전 가입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적용

4. 착신자과금 서비스

가. 통화료

구분	시내/시외1대역	시외2대역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통화료	49.5원/3분	세종시외2대역요금	17.193원	71.5원/3분

○ 기본료 : 서비스 가입자에 해당

- 기본료 : 월 4,400원/회선

- 프리미엄기본료 : 월 11,000원/회선

- 번호이동 처리비용 : 2,000원/회선

5. 개인번호서비스

가. 개인번호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 가입자 : 기본료 + 이용통화료

○ 서비스 이용자 : 이용통화료

○ 기본료

- 일반형 : 번호당 1,100원/월

※ 월 4콜 이상 착신되는 경우 기본료 면제(일반형 서비스에 한함)

※ 당사에서 출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부가기능으로 개인번호를 신청하거나, 당사 결합상품 출시를 기념으로 한 프로모션 기간 내 개인번호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기본료 면제

- 음성인식형 : 번호당 2,200원/월

- VPN형 : 가상번호 또는 생활번호 당 계약기간 단위 기본료

계약기간	월	1년	2년	3년	5년
기본료(원)	1,100	3,300	5,500	7,700	11,000

※ VPN번호 100개 이상 신청시에만 대표번호 할당

※ 장기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월 단위 기준으로 기본료 계산

- ARS 호스팅 형 : 번호당 11,000원/월

- 안심번호서비스 : 번호당 1,100원/월

※ 월 3콜 이상 착신되는 경우 기본료 면제(안심번호 서비스에 한함)

※ 안심번호서비스 계약기간별 요금(선납)

계약기간	월	6개월	1년	2년
기본료(원)	1,100	5,500	9,900	16,500

- 050 팩스형 : 번호당 1,100원/월

※ 당사에서 출시한 어플리케이션의 부가기능으로 개인번호를 신청하거나, 당사 결합상품 출시를 기념으로 한 프로모션 기간 내 개인번호를 신청한 고객에게 한하여 기본료 면제

- 안심번호레코딩서비스

구분	요금	비고
1~10,000회선	110만원	최저이용료
10,000회선 이상	22만원/만 회선당	

나. 이용통화료

구분	발신	착신		요금내역	비고	
0504 통화료	유선	유선	시내	44원/1분		
			시외	1대역	44원/1분	
				2대역	44원/1분	
		국제	세종 국제전화 요금 적용			
		무선	Cellular	세종 시외약관 이동망착신호 통화료 요금 적용		
			PCS			
	Pager/VMS		44원/1분			
	무선	유선	국내	발신 무선전화의 해당요금 적용		
			국제	세종 국제전화 요금 적용		주1)
		무선	Cellular	발신 무선전화의 해당요금 적용		
			PCS			
	Pager/VMS					
	인터넷전화	유선		71.5원/3분		
		인터넷전화		71.5원/3분		
무선		세종 시외약관 이동망착신호 통화료 요금 적용				
국제		국제전화 이용약관				
SMS	인터넷	유/무선		22원/건	주2)	
ACS	인터넷	유선		33원/1분		

주1) 세종 국제전화요금

주2) 월 과금통화료 11,000원 이상 시 10% 할인. 월 과금통화료 22,000원 이상 시 20% 할인

다. 부가기능 이용료

구분	유선망 발신	무선망 발신
이용료	44원/1분	주1)

주1) 발신 무선전화의 해당요금 적용

라. 음성인식 체험할인

- 개인번호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인식 통화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적용 기간 제공을 위해 최초 가입자에 한하여 익월 말 까지 통화료 할인을 제공

대상통화	통화대상	할인액
국내통화 한함	유선발신 → 유선착신 유선발신 → 무선착신	3,300원/월

6. 음성포탈 대표번호 서비스

-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시내/시외1대역	시외 2대역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통화료	42.9원/3분	세종시외2대역 요금 준용	이동전화 요금	71.5원/3분

7. 세종 레터링 서비스(SEJONG Lettering Service)

- 비즈레터링 이용요금

구분	건수	기본료	단가	비고
1구간	1 ~ 50,000건	2,310,000원	660,000원	최저이용료
2구간	50,001 ~ 100,000건		12.1원	건당과금
3구간	100,001 ~ 300,000건		11원	
4구간	300,001 ~ 1,000,000건		9.9원	
5구간	1,000,000 ~ 2,000,000건		8.8원	
6구간	2,000,001건 이상		7.7원	

※ SK텔레콤, LGU+ 가입고객에 한해 제공하며 단말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용요금은 총건수 구간의 단가에 5만건을 제외한 건수를 곱한 값에 66만원 최저이용료와 합산(5만건 이하 시, 최저이용료 부과)

- 오피스레터링

- 요금제는 내선번호 기준으로 적용
- 레터링 표기가 가능한 SKT, LGU+ 이동전화 단말에 한하여 제공됨

- SKT 이동전화 단말 이용요금

요금제	발송건수	이용요금
Office 1	100건/월	1,100원/월
Office 2	200건/월	1,650원/월
Office 3	500건/월	2,750원/월
Office 4	2,000건/월	6,600원/월

※ 월 발송건수 초과 시에는 레터링 표시가 안됨

- LGU+ 이동전화 단말 이용요금 : 1,100원/월

#### 8. 다자간 컨퍼런스 서비스

○ 이용요금

구분	무선착신	유선착신(인터넷전화포함)	국제착신
이용요금	86.9원/30초	44원/30초	008 표준요금

#### 9. 스마트 컨퍼런스

○ 이용요금

구분	이용요금	비고
통화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시외1대역 : 42.9원/3분</li> <li>○ 시외2대역 : 세종텔레콤 시외2대역 요금</li> <li>○ 시내/시외1대역 : 42.9원/3분</li> </ul>	회의 참석자(접속자) 요금부담
서비스이용료	○ 132원/분/회선	회의 주최자(가입자) 요금부담
교환원 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 : 66원/분</li> <li>○ 무선 : 110원/분</li> <li>○ 국제전화 : 00365 표준요금</li> </ul>	
웹 컨퍼런스**	○ 132원/분/회선	

\* 교환원이 직접 회의참석자를 호출하여 회의에 접속시켜주는 서비스

\*\* 전화 회의 시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 10. 전화비즈링 서비스

○ 이용요금 : 번호당 550원/월

#### 11. 전화알림먼트 서비스

○ 이용요금 : 번호당 550원/월

#### 12. 지능형 SMS/MMS 서비스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지능망번호 가입자에게 수신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한 월 기본료
- 회신 메시지 발송요금 : 수신된 메시지에 대해 해당 지능망 번호가입자가 발송하는 메시지 이용요금

구분	기본요금(월)	회신메시지 발송요금(건)			
		SMS (80byte)	LMS (2,000byte)	MMS (이미지 등)	무료제공
WEB이용	66,000원	16.5원	33원	132원	66,000원 무료제공
	33,000원	22원	38.5원	165원	33,000원 무료제공
	22,000원	미제공			
Agent이용	22,000원	미제공			

※ WEB이용(설비제공형) : 회사의 SMS/MMS 연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송/수신

※ Agent이용(자가 설비구축형) : 고객이 직접 SMS/MMS 연동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회사와 연동하여 메시지를 수신

13. BMS 서비스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지능망 서비스(전국대표번호, 착신자과금서비스) 가입자의 번호로 발신한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미리 설정한 문자메시지(SMS, LMS, MMS)를 발송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월 기본료
- 메시지 발송 요금 :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시지(SMS, LMS, MMS)에 대한 이용요금

상품명	기본료	발송요금(건)	기능	비고
BMS10	11,000	SMS 16.5원	SMS 발송	
BMS20	22,000	SMS 16.5원 LMS 55원 MMS 165원	SMS,LMS,MMS발송	
BMS30	33,000		인증쿠폰기능	
BMS50	55,000		첫고객쿠폰기능	
BMS100	110,000		모바일홈페이지기능	

14.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번호등급 기준

○ 번호등급

번호등급	번호유형	최저 회선수
0	XX(X=5~9), X0(X=5~9)	200회선
1	X2(X=5~9) 기타 : 58, 75, 79, 85, 89	100회선
2	상기 외 번호	30회선

※ 이용 신청자가 번호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회선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를 부여합니다.

※ 이용 신청자가 번호 신청 시 해당 등급 내 번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번호 부여 후,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착신회선이 번호 등급별 최저 회선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기준 회선수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기존 번호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서비스 가입요건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 별 최대 가입 회선수는 3회선 입니다.

다. 서비스 이용료

○ 회선당 이용료 : 11,000원

○ 기본료 : 회선당 이용료 X 이용회선 수

- 번호등급별 최저 회선수 미만 이용시 최저 회선수를 이용회선수로 함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료(서비스 계약자 부담) : 88원/건(이동통신 사업자 구분 없음)

○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ARS서비스 이용료

구분	서비스이용자	서비스계약자	비고
ARS기본형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착신회선당 기본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부가사용료 : 3,300원/월/회선	TTS, 시나리오기능 전화연결기능 등 제공
ARS 프리미엄형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착신회선당 기본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부가사용료 : 11,000원/월/회선	ARS기본형 기능 성우녹음/DB연동 등 기능제공
ARS 커스텀형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착신회선당 기본료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와 동일 ○ 부가사용료 : 55,000원/월/회선	ARS프리미엄형 기능 시나리오 별도 개발제 공

○ 프로모션

- 대상 : 프로모션 기간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가입고객

- 기간 : 2019년 4월 19일 ~ 2019년 10월 18일

- 내용

1. 시외2대역/무선 발신 통화료 30%할인(시내 및 시외1대역 제외)

2.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전환으로 인한 약정기간 위약금 미적용

※ 일정기간 병행 사용 후 기존 대표번호 해지 시, 위약금 미부과

라. 통화료

○ 통화료

구분	시내/시외1대역	시외2대역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통화료	49.5원/3분	15.18원/10초	17.193원/10초	71.5원/3분

**[별표2] 신규 청약 구비 서류**

1. 개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		본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활용/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외 국 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영주권자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주한미군 ID 카드 중 1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교관 신분증, 주둔명령 서, 주한미군 ID카드 중1, 대리인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여권,외국인등록 증 중 1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1,대 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등 의서,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의료보험증 등)	법정대리인내방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입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